

## 부록 2-나-2

1. 유럽연합은 모든 적용대상 제품에 대하여 자신의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보증으로서 부속서 2-나 제3조나호1)목에 규정된 절차를 수용한다.
2. 대한민국은 자신의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보증으로서 다음을 수용한다.
  - 가. 이 협정의 서명일에 전파법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,
    - 1) 부속서 2-나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경과기간 동안, 부속서 2-나의 제4조제2항가호에 정의된 절차, 그리고
    - 2) 경과기간 후에는 부속서 2-나 제3조나호1)목 또는 제3조나호2)목에 정의된 절차. 두 가지 절차 중 선택은 대한민국이 한다.
  - 나. 이 협정의 서명일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,
    - 1) 부속서 2-나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경과기간 동안, 부속서 2-나 제4조제2항나호에 정의된 절차, 그리고
    - 2) 경과기간 후에는 부속서 2-나 제3조나호1)목, 제3조나호2)목 또는 제3조나호3)목에 정의된 절차. 세 가지 절차 중 선택은 대한민국이 한다.
3. 이 협정 서명일에 이 부록 제2항에 언급된 둘 이상의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, 공급자는 이 부록 제2항의 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대한민국이 선택한 어느 하나의 절차에 따라 전자파적합성에 대한 적합성 보증을 제공할 자유가 있다. 어떤 제품이 향후 이 부록 제2항에 언급된 둘 이상의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, 적용대상 제품의 전자파적합성에 관련된 것이든 안전에 관련된 것이든,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.